

의안
번호

5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6. 03. 20.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574호
- 다. 제출일자 : 2026. 03. 03.
- 라. 회부일자 : 2026. 03. 10.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정비하고, 직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성북구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생활 보장 규정 신설(안 제13조)

나.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제18조제1항, 별표 5)

-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10일 →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25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01. 29. ~ 2026. 02. 18.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성북구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일·생활 균형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1) 사생활 보장 규정 신설(안 제13조)

- 구청장이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와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직 운영 과정에서 직원의 기본적 권리 보호에 대한 기관장의 책무를 명문화함.
- 현재 서울시¹⁾를 포함하여 용산구·성동구·광진구 등 다수 자치구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규정 신설은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흐름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2)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 확대(안 제18조제1항, 별표 5)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 시 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경조사 휴가일수표 >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3) 그 밖의 조문 정비

- 조문 신설에 따른 조 번호 및 별표 인용 조문을 체계에 맞게 정비한 사항임.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법령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며,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는 저출산 대응 및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부합함.
- 또한 사생활 보장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기관장의 책무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됨.